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1655 |
|----------|------|

2024년 2월 2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 1. 제안이유

- 2023. 7. 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업무 분장 조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일부 부존재 사항 발생함.
-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통해 심의 기능 역할 강화함.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당연직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명시함.(안 제3조의2)**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지정이 아닌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체제 구축함.(안 제4조제2항)**
- 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혁신과장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제1호)**
- 라. 2023. 7. 1.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정책·안전기획관은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제1호)**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55호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2023. 7. 1.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평가 및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에 대상과 시기, 작성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조례로 위임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통일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 단 계           | 내 용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
| 사업선정          | <p>(중앙)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부처별 양성평등 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24.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 대상사업 제시 → 협의 → 선정</li> </ul> <p>(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동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24.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 주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발굴 → 지방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선정</li> </ul> | 해당 부처<br>(→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br>(→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p>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설명자료 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24.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4.7월까지</li> </ul>                                                                                                                                                                                             | 해당 부처<br>(→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br>(→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검토의견 통보       | <p>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24.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4.8월까지</li> </ul>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반영계획 제출       | <p>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b>'개선의견'인 경우</b>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24.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4.9월까지</li> </ul>                                                                                                                                                                                                   | 해당 부처<br>(→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br>(→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반영계획 관리       | <p>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b>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b>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24.10~12월 (지방자치단체) '24.9~12월</li> </ul>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p>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평등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b>성인지 예산서 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26년 성인지 예산서 반영 (지방자치단체) '25년 성인지 예산서 반영</li> <li>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등</li> </ul>                                                                                                                                   | 해당 부처              | 해당부서                   |

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1) 성별영향평가책임관(안 제3조의2)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2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제14조1)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르면 소속 실장·국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규정한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각 자치구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위원회 위원장 구성**

| 지역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
|----|-------------------------------------------------|---------------|
| 서울 | 평생교육국장                                          | 위원중에서 호선      |
| 부산 | 교육국장                                            | 부교육감          |
| 인천 | 부위원장                                            | 부교육감          |
| 광주 |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 부교육감          |
| 대전 | 규정없음                                            | 교육국장          |
| 울산 | 교육국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 세종 | 규정없음                                            | 기획조정국장        |
| 경기 |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 제2부 교육감       |
| 강원 | 규정없음                                            | 부교육감          |
| 충북 | 부위원장                                            | 부교육감          |
| 충남 | 부위원장                                            | 부교육감          |
| 전북 |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 전남 |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 부교육감          |
| 경북 |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부교육감          |
| 경남 |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부교육감          |
| 제주 | 규정없음                                            | 위원 중에서 호선     |

## 2)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2항)에 대한 검토

- 1)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일 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부위원장과 동일하게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까지 겸임하도록 할 경우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가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 이처럼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포함되어 있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비롯한 교육청소속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더욱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3)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3항제1호)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추가하고, 정책·안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며, 교육혁신과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당연히 위원장으로 보하던 방식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당연직

위원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정책·안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혁신과장을 삭제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sup>3)</sup>에 따른 부서명의 변경과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871호, 2023. 10. 5.,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1655 |
|----------|------------|

제안연월일 : 2024년 2월 2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경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비롯한 교육청소속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함.

## 2. 주요내용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과” 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수<br>정<br>안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br>① (생 략)<br>② <u>위원장은 법 제14조<br/>에 따른 성별영향평가<br/>책임관이 되며, 부위원<br/>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br/>한다.</u> | 제4조(위원회의 구성)<br>① (생 략)<br>② <u>위원장과 부위원장<br/>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br/>다.</u> | 제4조(위원회의 구성)<br>① (개정안과 같음)<br>② <u>위원장은 위촉직 위<br/>원 중에서 호선하고,<br/>부위원장은 위원 중에<br/>서 호선한다.</u> |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 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혁신과장” 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lt;신   설&gt;</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u>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u><br/><u>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 부위원</u><br/><u>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u><br/><u>사람이 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 <u>당연직 위원: 정책·안전기획</u><br/><u>관, 예산담당관, 교육혁신과장, 성</u><br/><u>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u></p> <p style="padding-left: 20px;">2.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④ (생   략)</p> | <p><u>제3조의2(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u><br/><u>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u><br/><u>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u><br/><u>국장으로 한다.</u></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br/>같음)</p> <p>② <u>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u><br/><u>호선하고, -----</u><br/><u>-----.</u></p> <p>③ -----<br/>-----.</p> <p style="padding-left: 20px;">1. -----: <u>성별영향평가책임</u><br/><u>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u><br/><u>-----</u></p> <p style="padding-left: 20px;">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④ (현행과 같음)</p> |